

간담화, 한일도서협정과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

엄태봉 (대진대학교 강의교수)

논문요약

본고의 목적은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 어떠한 역사인식이 내재되어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을 각각 한일회담의 ‘구조약의 무효 확인문제’와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구조약의 무효 확인문제’에 대해 당시의 일본정부는 한일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들은 합법적이었으며, 식민지 지배도 정당했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해서도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으며,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도 합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분석 결과,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는 ‘구조약의 무효 확인 문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과 동일한 역사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간 담화는 한국과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최초의 총리 담화였고, 한일도서협정은 간 담화의 후속 조치로 한일회담 이후의 첫 대규모 문화재 인도를 규정한 협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 지배와 문화재 반출이 합법적이었다는 역사인식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이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간 담화, 한일도서협정, 역사인식, 식민지 지배 인식, 연속성

* 이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연구임(NAHF-2018-기획연구-26). 본 논문에 유익한 논평과 제안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I. 머리말

2020년은 경술국치 110년째가 되는 해이다. 일본은 1876년의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1905년의 을사늑약, 1907년의 정미7늑약, 1909년의 기유각서 등을 통해 조선을 잠식했고, 1910년 8월 22일, 한일강제병합조약(이하, 강제병합조약) 체결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이후 110여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도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역사인식의 간극으로 인해 한일 양국 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교과서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강제징용공 문제, 독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일본정부는 역사인식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대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 정권 시기,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발표한 ‘내각 총리대신 담화’(이하, 간 담화)이다. 간 총리는 강제병합조약 체결 100년째가 되는 2010년 8월, 한국과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담화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동년 11월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이하, 한일도서협정)을 체결하고, 2011년 12월에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1,205책의 고서적을 한국으로 인도했다.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 먼저 간담화는 일본정부의 과거사 관련 총리 담화인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 그리고 아베 담화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에 비해, 그 대상을 한국과 한국국민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련의 과거사 관련 총리 담화 중에서 처음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간 담화는 강제병합조약으로 인한 식민지 지배, 3·1 독립운동, 정치·군사적 배경, 한국인의 뜻에 반한 식민지 지배, 국가와 문화를 빼앗김 등의 표현으로 사죄와 반성의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다음으로 한일도서협정은 조선왕실의궤 등의 고서적을 넘기겠다는 간 담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후

속 조치로써, 일본정부가 간 담화의 내용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일회담 이후의 첫 대규모 문화재 인도를 규정했다는 점에서도 한일도서협정의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은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평가를 내려졌다. 간 담화는 한국인의 의지에 반해 식민지 지배가 이루어진 것을 사죄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노력했다는 평가와 함께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을 언급하지 않아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¹⁾ 한일도서협정도 획기적인 한일 관계 변화의 시발점이자 일본정부의 관계 개선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반환이 아닌 인도가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²⁾

그렇다면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는 어떠한 역사인식이 존재했던 것인가? 본고는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동 담화와 협정이 강제병합조약의 불법성을 언급하지 않은 점과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하여, 동 담화와 협정에 내재된 역사인식을 검토하고,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을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해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을 각각 한일회담의 ‘구조약의 무효 확인문제’(이하, 구조약 문제)와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을 통해 검토한다.

본고에서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을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은 경술국치 110년째가 되는 해이자, 간 담화 발표 및 한일도서협정 체결 10년째가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강제병합조약 100년에 대한 간 담화와 함께 그 후속 조치로 체결된 한일도서협정을 검토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술한 것처럼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은 3.1 독립운동과 같은 표현을 통해 한국과 한국국민에 대해 반성

1) 간 담화에 대한 평가는 권영진, “〈日총리담화〉 학계 ‘핵심비켜간 담화.’” 『연합뉴스』, 2010년 8월 1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00810103500005>(검색일: 2019.6.25) 및 藤原夏人, “【韓国】日韓併合100年をめぐる動き.” 『外国の立法』No.245-1, 2010을 참조.

2) 한일도서협정에 대한 평가는 YTN, “한일, 조선왕실의궤 등 1,205책 도서 반환 서명.” 『YTN』, 2010년 11월 15일, https://www.ytn.co.kr/_ln/0101201011150218425_069(검색일: 2019.6.25) 및 장성구, “‘日반출 문화재 반환’ 합의 의미와 전망은.” 『연합뉴스』, 2011년 11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0110821020_0043(검색일: 2019.6.25)을 참조.

과 사죄를 표명한 첫 총리담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정부가 간 담화의 내용을 한일도서협정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담화와 협정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일 관계에서의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의 중요성에서 볼 때 동 담화와 협정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 담화를 다룬 연구이다.³⁾ 선행연구들은 일본의 역사인식문제와 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한 외교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 담화를 다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으며, 담화를 평가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둘째, 한일도서협정에 대한 연구이다.⁴⁾ 이 연구는 문화재 반환 유형을 반환거부형, 사죄형, 거래형, 자발형으로 분류하여, 한일도서협정을 사죄형으로 규정하고, 동 협정에 대한 일본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논했다. 하지만 한일도서협정에 담긴 역사인식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한일회담의 구조약 문제와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을 통해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 내재된 역사인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을 밝힌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각각 구조약 문제와 문화재 및 문화협정을 통해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의 역사인식을 검토하고,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을 밝힌다. 제4장에서는 본문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기로 한다.

3) 李鐘元他, 『戰後日韓關係史』, pp. 221-223; 남기정,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와 안보의 연동 메커니즘: 투트랙 접근의 조건과 과제.” 『일본연구논총』제45호, 2017, pp. 123-152; 정재정, “한일협력과 역사문제-갈등을 넘어 화해로.” 『일본연구논총』제43호, 2016, pp. 165-193; 이기태, “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한국정책.” 『일본연구논총』제38호, 2013, pp. 133-163; 최희식, “전후 한일관계의 구도와 민주당 정부 하의 한일관계.” 『국제·지역연구』 20권 제3호, 2011, pp. 43-75.

4) 한소미, “문화재 반환협상의 국제정치: 2011년 일본과 프랑스의 한국 문화재 반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II. 간담화와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

1. ‘구조약의 무효 확인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한일 양국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사 청산과 새로운 국교 수립을 위한 국교정상화를 목적으로 한일회담(1951년 10월 21일-1965년 6월 22일)을 진행했다. 기본관계문제,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어업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이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치열한 공방은 약 14년 간 이어졌다.

기본관계문제는 과거사 청산과 국교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관계를 다루는 문제였다. 본고에서는 기본관계문제 중, 연구주제와 관련 깊은 구조약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구조약 문제는 한일강제병합(이하, 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일련의 조약과 협정들이 언제부터 무효였는지를 묻는 문제였다. 한국 측은 ‘체결 당시부터 무효였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일본 측은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체결되었고, 한국이 독립한 시점에서 무효가 되었다’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의 결과에 따라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불법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

구조약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제1차 회담(1951년 10월 21일-1952년 4월 25일)이었다. 제4회 기본관계위원회(1952년 3월 5일)에서 한국 측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조약(안)’을 제출했다. 구조약 문제는 ‘대한민국 및 일본국은,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구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또는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제3조로 설정되어 있었다. 한국 측은 ‘민족의 총의에 반한 병합이었으며, 민국은 한반도에는 없어도 해외에 있었고, 3·1선언에도 있듯이 민족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 (중략) … 이를 넣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두 민족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제3조는 일본 측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던 한국은 절대적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측은 강제병합조약이 ‘국가 간에 유효 적법한 조약이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귀국의 국민감정이 어쨌든 간에 현재 일본 인들은 적법한 병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론하면서 삭제를 요구했다.⁵⁾ 즉 한국 측은 동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부당했다는 것을 천명하려고 했던 반면, 일본 측은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삭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강제병합조약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는 한일회담 당시에도 해결되기 힘든 문제였으며,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구조약 문제를 비롯한 기본관계문제는 제7차 회담(1964년 12월 3일 - 1965년 6월 22일)에서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기본조약)으로 타결되었다.⁶⁾ 구조약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과거의 청산은 한국 국내사정을 봐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본 측은 구조약이 강제적인 압박을 통해 위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의미라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⁷⁾ 구조약 문제는 위와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already null and void’(이미 무효, もはや無効)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본조약의 제2조인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일단락되었고, 한일 양국은 이에 대해 서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구조약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은 강제병합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조약과 협정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식민지 지배도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구조약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일회담의 조약과 협정의 심의를 위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열린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조약 및 협정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이하, 중의원 특별위원회)와 ‘일한조약 등 특별위원회’(이하,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먼저 당시 외무성 조

5) 外務省, 「日韓會談第五回基本關係委員會議事録」, 記入なし, No. 977.

6) 기본관계문제의 구체적인 교섭 과정은 장박진, “한일회담에서의 기본관계조약 형성과정의 분석-제2조 ‘구조약 무효조항’ 및 제3조 ‘유일합성법 조항’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17권 2호, 2008, pp. 1-39를 참조.

7) 外務省, 「第7次日韓全面會談基本關係委員會第3回會合」, 1964年12月12日, No. 1345.

약국장이었던 후지사키 마사토(藤崎萬里)는 ‘병합조약 자체는 한국 독립 때 실효되었다. 병합 이전에 맺어졌던 조약은 각각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실효되었고, 또한 병합 때까지 살아있던 것들은 병합 때 실효했다’⁸⁾, ‘제2조는 병합 조약 및 그 이전의 모든 이른바 구조약은 현시점에서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⁹⁾라고 설명했다.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 또한 ‘병합조약은 한국의 독립선언 때부터 무효이며, 그 이전의 조약은 각각 그 조약에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완료되면서, 혹은 병합조약이 성립·발효했을 때 효력을 잃었다’¹⁰⁾, ‘대등한 입장으로 또한 자유의사로 이 조약이 체결되었다’¹¹⁾고 설명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강제병합조약 및 그 이전의 조약과 협정들은 모두 유효하고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기본조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2. 간담화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간 총리는 2010년 8월 10일, 강제병합이 100년이 되는 해에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국과 한국국민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간담화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 사할린 동포 및 한반도 출신 유골봉환 지원과 조선왕실의례 등의 고서적 인도, 한일 우호협력 관계 확인 및 앞으로의 협력 천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역사인식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¹²⁾

올해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 8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8) 衆議院, 「第50回国会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条約及び協定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第6号」, 1965年10月29日.

9) 参議院, 「第50回国会日韓条約等特別委員会第6号」, 1965年11月27日.

10) 衆議院, 「第50回国会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条約及び協定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第8号」, 1965年11月1日.

11) 衆議院, 「第50回国会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条約及び協定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第10号」, 1965年11月5日.

12) 해당 전문은 외교부, 『2015 일본개황』, 서울: 외교부, 2015, p. 241 참조.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자 생각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고자 생각합니다.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多大)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わびの氣持)을 표명합니다.

일본정부는 간 담화를 통해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 등의 표현을 통해 한국과 한국국민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 특히 강제병합조약의 언급,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 3·1 독립운동, 한국인이라는 표현은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 아베 담화 등 지금까지 발표된 과거사 관련 총리 담화에는 없었던 것으로서 높이 평가할 만한 부분이다. 또한 담화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우려와 자민당의 반대, 보수우익 단체의 시위¹³⁾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본정부가 간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¹⁴⁾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간 담화에는 어떠한 역사인식이 담겨져 있었을까. 이하에서는 간 담화를 둘러싼 일본국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 담화에 내재된 역사인식을 검토하기로 한다.

간 담화 발표 이후, 2010년 10월 21일에 열린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일한병합 100년의 총리담화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다. 자민당의 사이토 마사

13) 김종현, “〈日총리담화〉 보수우익 반발에 ‘축소 굴절.’” 『연합뉴스』, 2010년 8월 1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00810114600073>(검색일: 2019.6.25.).

14) 간 담화의 성립 과정은 일본 국내의 정치 과정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아직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작업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히사(佐藤正久) 의원은 ‘일한병합조약, 이것은 합법이라고 인식해도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외상은 ‘당시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¹⁵⁾ 한편 2011년 5월, 한일도서협정 비준을 위해 열린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 5월 24일의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모두의 당(みんなの党)의 사쿠라우치 후미키(桜内文城) 의원은 한국국민의 의사에 반해라는 표현과 관련해, 간 총리가 ‘일한병합조약 자체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각의결정으로 나타낸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마츠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은 1965년에 체결된 ‘기본조약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이미 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견해’라고 답변하였다.¹⁶⁾ 마츠모토 외상의 이와 같은 발언은 5월 26일의 외교방위위원회에서도 확인된다. 민주당의 오오노 모토히로(大野元裕) 의원이 한일회담의 청구권 협정과 관련하여, 이 조약의 유효성과 일본정부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자, 마츠모토 외상은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일한기본관계조약을 비롯한 일한국교정상화 관련 조약은 현재의 한일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기본적인 틀인 관련 조약 및 그를 바탕으로 한 조치는 당연히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답변했다.¹⁷⁾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의 외상들이 한일회담의 기본조약을 언급하면서, ‘일한병합조약’의 효력에 대해 모두 ‘유효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한일회담의 구조약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은 상반된 입장이었다. 한일 양국은 동 문제를 ‘already null and void’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입장대로 구조약의 효력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즉 일본정부는 조선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 속에서 체결된 구조약과 협정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체결된 것이었고, 식민지 지배 또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유지했던

15) 参議院, 「第176回国会参議院外交防衛委員会第2号」, 2010年10月21日.

16) 参議院, 「第177回国会参議院外交防衛委員会第10号」, 2011年5月24日.

17) 参議院, 「第177回国会参議院外交防衛委員会第11号」, 2011年5月26日.

것이다. 간 담화를 발표한 일본정부는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과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약 문제의 ‘일한병합조약과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다’는 기존의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간 담화에 내재된 역사인식을 통해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은 담화를 발표한 간 총리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간 총리는 담화 발표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병합조약이 한국국민의 의지에 반해 강제되었고, 근본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 총리는 담화에서 한국국민의 의지에 반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병합조약이 무효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간 총리는 ‘일한병합조약에 대해서는 1965년에 체결된 일한기본조약의 생각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것을 답습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¹⁸⁾ 즉 간 총리는 담화를 직접 발표하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지만,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다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간 담화는 한국과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강제병합조약의 언급 및 3·1 독립운동, 한국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최초의 총리 담화였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역사인식이 내재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간 담화를 발표한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18) 首相官邸, “菅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10年8月10日, <https://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08/10kaiken.html>(검색일:2019.6.25.).

Ⅲ. 한일도서협정과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

1.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 출토 문화재의 처리를 둘러싼 문제였다. 한국 측은 ‘식민지 지배는 불법적이었으며, 당시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도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반출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게 문화재를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에 일본 측은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으며,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반출된 것이다. 일본 측에게는 문화재를 반환할 법적의무는 없지만, 일본정부가 소유한 약간의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기증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반환’과 ‘기증’, ‘법적 의무’와 ‘자발적’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일 양국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입장은 상반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 문제의 타결까지 14년여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결국 문화재 반환 문제는 제7차 회담에서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¹⁹⁾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은 협정서와 합의의사록, 그리고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²⁰⁾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국의

19) 문화재 반환 문제의 구체적인 교섭 과정은 국성하,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 연구.” 『한국독립운동연구』 제25집, 2005, pp. 369-393; 박훈,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교섭의 전개과정과 쟁점.”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편),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의제로 본 한일회담』, 서울: 선인, 2010, pp. 357-386; 조윤수,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교섭.” 『동북아역사논총』 제51호, 2016, pp. 125-165; 엄태봉, “한일회담 중단의 문화재 문제에 관한 연구.” 『일본공간』 제21호, 2017, pp. 160-193; 엄태봉, “제6차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 연구-교섭 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60호, 2018, pp. 116-159를 참조.

20) 외교부, 『2015 일본개황』, p. 203.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의 문화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제 2 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 3 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의 작성을 둘러싼 논의 과정을 통해 동 협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제7차 회담의 제4회 문화재위원회(1965년 6월 15일)에서 한일 양국은 각각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문제 해결 및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요강(안)’(이하, 요강안)²¹⁾과 ‘문화상의 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안)’²²⁾(이하, 협정안)을 제시했다. 두 가지 안들은 모두 제6차 회담의 예비회담 제21회 본회의(1962년 12월 26일)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일본국 정부와

21) 해당 전문은 외교부, 『제7차 한-일회담(1964.12.3.-65.6.22)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1965』(이하, 제7차 한일회담 문화재위원회), 1965, pp. 20-21을 참조.

22) 해당 전문은 아시아局北東아시아課内交渉史編纂委員会, 「韓国との文化財・文化協定の条文化についての交渉」, 1969年3月, No. 461을 참조.

대한민국정부 간의 문화상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 요강(안)²³⁾(이하, 의정서 요강안)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일본 측이 제시한 의정서 요강안은 전문과 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화협력이 목적이었다. 전문의 ‘상호 간의 문화협력 및 우호관계를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 제1조의 ‘양국민 간의 문화교류를 긴밀히 하는’ 등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측의 과거사 청산으로써의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었다. 또한 제2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 역사적 문화재에 대해 갖는 깊은 관심을 고려하여 … (중략) … 일본국 정부 소유의 문화재를, 대한민국 정부에게 기증하기로 한다’라면서 문화재를 언급했지만, 그 목적은 ‘대한민국에서의 학술, 문화 발전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문화협력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그것은 ‘한일 간의 현안문제의 하나로서의 문화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연결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²⁴⁾고 반박했다. 즉 문화재 반환 문제를 과거사 청산의 일환으로써 제기한 한국 측으로서는 그러한 ‘성질’의 내용이 일절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일본 측의 의정서 요강안을 받아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반대로 일본 측은 식민지 지배도 합법적이었고 문화재도 합법적으로 반출되었다는 입장이었으므로, 과거사 청산이라는 ‘성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문화협력을 위해 의정서 요강안을 작성했던 것이다. 이처럼 한일 양국의 문화재 반환 문제를 둘러싼 상반된 입장은 의정서 요강안에도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의정서 요강안을 수정하여 작성된 일본 측의 협정안은 전문과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의정서에서 협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 명칭의 의미와 내용면에서는 의정서 요강안과 흡사했다. 오히려 1조에서 ‘문화, 학술, 과학, 기술, 예술, 교육 및 스포츠 분야에서의 양 체결국 국민 간의 양호하고 유효한 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의정서 요강안 보다 문화

23) 해당 전문은 外務省, 『日韓予備交渉第21回會合記録』, 1962년12월26日, No. 651을 참조.

24) 외교부,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1-65차. 1962.8.21.-64.2.6 전5권(V.3 22-32차 1963.1.11.-3.28)』, 1964, p. 30.

협력의 취지가 더 부각되었다. 또한 한국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표현상의 변화일 뿐 ‘인도라는 형식으로 기증한다’는 의미였다.²⁵⁾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 문제의 ‘성질’이 드러나지 않은 협정안에 대해 ‘문화협력만의 문제로 인도를 다루는 것은 수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자신들의 요강안을 설명했다.

한국 측의 요강안은 전문과 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과거사 청산이라는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명칭에 ‘문화재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을 삽입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반환’과 ‘기증’ 문제는 ‘인도’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도라는 형식으로 문화재를 반환’ 받기로 했다. 그리고 문화협력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무시한다면 동 문제의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 측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여 명칭에 ‘문화협력’을,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이와 관련된 표현을 삽입했다.²⁶⁾ 이처럼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문화재 반환 문제의 ‘성질’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6월 17일, 한국 측의 요강안을 수정하여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문화협정(안)’²⁷⁾(이하, 문화협정안)을 제시했다. 한국 측의 요강안과 어느 정도 비슷했지만, 명칭은 문화협력을 의미하는 ‘문화협정’으로 변경되었고 ‘문화재’는 없었다. 한국 측은 문화협정안의 명칭에 대해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 측의 강한 요구가 계속되자, 일본 측은 내부논의를 거쳐 명칭에 대한 한국 측의 요구를 수락했고, 한일 양국은 6월 19일에 수정안에 대한 최종 확인을 한 후, 6월 22일에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과거사 청산이 아닌 문화협력을 목적으로 동 협정을 작성하

25)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주장한 ‘인도’를 거부하면서 ‘기증’을 계속 사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한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환’과 ‘기증’ 문제가 ‘인도’로 타결되는 과정은 엄태봉,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재조명.” 『아태연구』 제26권 제2호, 2019, pp. 218-221을 참조.

26) 외교부, 『제7차 한일회담 문화재위원회』, pp. 8-10.

27) 해당 전문은 아시아局北東アジア課内交渉史編纂委員会, 「韓国との文化財・文化協定の条文化についての交渉」, 1969年3月, No. 461을 참조.

고 체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인식은 중의원 특별위원회와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시이나 에츠사부로(椎名悦三郎) 외상은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에 대해 ‘양 국민 간의 문화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 및 그 일환으로서 일정한 문화재를 한국정부에게 인도하는 것’²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후지사키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에 대해 ‘양국의 문화에 대한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에 따라 양국 간의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해질 것을 예상하여, 양국의 학술 및 문화발전, 그리고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맺어진 것이다. … (중략) … 일본국 정부는 한국 국민이 그 문화재에 대해 가지는 깊은 관심 및 조선동란에서 다수의 한국 문화재가 소실 또는 흩어진 것에 비추어,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부속서에 열거된 문화재를 … (중략) … 한국정부에게 인도하는 것, 또한 양국 정부는 자국 미술관 등 학술 및 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해 상대방 국민에게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²⁹⁾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문화협력을 위해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의 명칭과 내용 등 그 작성에 있어서, 문화협력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면서 한국 측이 주장했던 과거사 청산이라는 문화재 반환 문제의 ‘성질’이 되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즉 일본정부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으며, 문화재 또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과거사 청산과는 상관없이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을 체결했던 것이다.

28) 參議院, 「第50回国会日韓条約等特別委員会第2号」, 1965年11月22日.

29) 衆議院, 「第50回国会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条約及び協定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第2号」, 1965年10月25日.

2. 한일도서협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

한일도서협정은 간 담화의 후속 조치로 2010년 11월 14일에 체결되었다. 동 협정은 그 체결까지 두 번의 계기가 있었다. 그 첫 번째 계기는 조선왕실 의궤 반환 운동이었다. 2006년 9월 14일에 발족한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는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의 공동 환수 추진, 일본 국회의원 및 외무성 측과의 면담, 일본정부에 대한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을 펼쳤다. 시민단체 이외에도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도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요청했다.³⁰⁾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8년 2월 22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한국 특파원과의 기자회견에서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³¹⁾

2009년 8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서, 조선왕실의궤와 관련된 움직임이 구체화된다. 2010년 7월 7일,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일본외국특파원협회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전후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 출신 강제징용자의 유골 반환 문제와 한국에서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 문제, 재한 피폭자 문제’ 등을 언급하고, ‘하나씩 하나씩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³²⁾ 이후 7월 말, 일본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은 총리 담화를 발표하고, 일제 시기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궁내청에 보관 중인 81종의 조선왕실의궤가 우선 반환 대상으로 고려’³³⁾되고 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한일 양국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그러나 8월 10일에 발표된 간 담화에서 조선왕실의궤가 언급된 것을

30) 한국의 국회,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의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대한 활동은 해문, 『되찾은 조선의 보물 의궤』,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p. 270-273을 참조.

31) 박용채, “후쿠다 日 총리 ‘李 당선인 對日정책 기초 소중히 여길 것.’” 『경향신문』, 2008년 2월 2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222349535&code=970203(검색일: 2019.6.25.).

32) 김동진, “日 관방, 강제징용자 보상필요 시사.” 『세계일보』, 2010년 7월 8일, <http://www.segye.com/news/View/20100708000142>(검색일: 2019.6.25.).

33) 정우상, “강점기 약탈 문화재 日, 한국에 반환 추진.” 『조선일보』, 2010년 7월 21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1/2010072100131.html(검색일: 2019.6.25.).

본다면, 이 당시 일본정부는 조선왕실의궤 인도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활동을 비롯한 한국 측의 조선왕실의궤 반환 운동을 통해 일본정부도 그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일본정부는 간담화를 통해 조선왕실의궤의 인도를 공식화하기에 이른다.

한일도서협정의 두 번째 계기는 간담화였다. 간 총리는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면서, 고서적의 인도에 대해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되어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넘기고자 한다’라고 언급했다. 당시 조선왕실의궤는 궁내청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일본정부는 담화를 통해 조선왕실의궤 등 일본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고서적을 한국정부에게 건네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후 한일 양국은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고서적에 관한 협정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은 ‘반환’이라는 표현을 요구하고, 일본 측은 ‘인도’를 주장하는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협정서가 작성되었고,³⁴⁾ 11월 8일에 열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에하라 외상의 전화회담에서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렀다.³⁵⁾ 그리고 11월 14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APEC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한일도서협정이 체결되었다. 일본에서는 자민당의 반대로 한일도서협정의 연내 심의가 불가능해졌으나, 2011년에 들어서자 일본정부는 4월 말과 5월 말에 중의원과 참의원에 동 협정의 비준안을 제출했다. 자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다수 찬성으로 비준안이 가결되었고, 일본정부는 6월 10일, 한국정부에게 한일도서협정의 발효를 통보했다. 이후 10월 18일 방한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다음날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도서협정

34) 이강진, “일본, 조선왕실의궤 등 1,205책 반환키로.” 『YTN』, 2010년 11월 8일, https://www.ytn.co.kr/_ln/0101_201011082011292055(검색일: 2019.6.25.). 한일도서협정에 관한 1차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이를 둘러싼 협상 과정을 밝히는 작업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기로 한다.

35) 中内康夫, “日韓圖書協定の作成経緯と主な内容-朝鮮王朝儀軌等の韓国政府への引渡し-.” 『立法と調査』 No. 314, 2011, p. 22.

조인 당시 전시되었던 고서적 3종 5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넸고, 나머지 고서적들도 12월 6일에 최종적으로 인도가 되었다.³⁶⁾

이상에서 검토한 것처럼 한일도서협정의 첫 번째 계기는 2006년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조선왕실의궤 반환 운동이었으며, 두 번째 계기는 2010년에 발표된 간 담화였다. 한국에서는 시민단체, 국회,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이 조선왕실의궤의 반환을 일본 측에게 요구했고, 이 문제가 한일 양국 간의 외교적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한일 양국은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일본에서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면서 논의가 구체화되어 갔고, 한일도서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체결된 한일도서협정은 협정서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³⁷⁾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문화교류와 문화협력이 양국 및 양국민간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제 1 조

일본국 정부는 양국 및 양국민간 우호관계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특별조치로서 한반도에서 유래하는 부속서에 열거한 도서를 양국 정부 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 2 조

양국 정부는 전조에서 규정하는 조치에 따라 양국 간의 문화교류 및 문화협력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36) 조선왕실의궤 81종 167책, 규장각 도서 66종 938책,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화통 1종 1책 등 총 150종 1,205책이 한국으로 인도되었다.

37) 外務省, “도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 2010년 11월 14일, https://www.mofa.go.jp/mofaj/gaiko/treaty/pdfs/shomei_66_k.pdf(검색일: 2019.6.25.).

제 3 조

각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이 협정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대국 정부에게 통보한다. 이 협정은 늦은 쪽의 통보가 수령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일도서협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본정부는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고서적들을 인도할 것이고, 한일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문화협력을 보다 발전 시키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한일도서협정에는 어떠한 역사인식이 담겨져 있었을까. 이하에서는 한일도서협정을 둘러싼 일본국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 협정에 내재된 역사인식을 검토하기로 한다.

한일도서협정 비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1년 4월 22일과 4월 27일에 열린 중의원 외무위원회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도서에 관한 일본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 간의 협정 체결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건’이 제출되었고, 외무성, 궁내청, 경찰청, 총무성, 문화청 등 한일도서협정과 관계된 정부기관의 관료들 및 연구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 한 가운데, 중의원 의원들이 동 협정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실시했다.

4월 22일에 열린 외무위원회에서 자민당의 히라사와 가츠에(平沢勝栄) 의원은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기본조약,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이 체결되었고, 동시에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도 체결되어 문화재에 관한 문제도 모두 해결되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한일도서협정이 위의 협정을 ‘공동화(空洞化) 하는 형태로 맺어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마츠모토 외상은 ‘미래지향적인 일한관계라는 관점에서, 이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발적인 조치로 도서를 인도한다는 것을 담화에 표명했고, 결정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³⁸⁾

히라사와 의원이 ‘공동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한일회담에서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는데, 왜 굳이 해

38) 衆議院, 「第177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第8号」, 2011年4月22日.

결된 문제에 대해 한일도서협정을 체결해서 한국에게 문화재를 또 돌려주는 것인가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었다. 이는 한일도서협정에 대한 자민당의 반대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마츠모토 외상의 답변에서 ‘자발적인 조치’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해당 표현이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고 문화재 반환의 법적의무는 없지만,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혹은 국교정상화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약간의 문화재를 기증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과거사 청산과는 관계없이 문화협력이라는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조치로써 문화재를 기증한다는 것이었다. 마츠모토 외상의 ‘자발적’이라는 표현에는 위와 같은 입장이 담겨져 있었고, 강제병합과 관련된 과거사 청산이라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어서 히라사와 의원은 한국이 인도 대상 도서에 대해 일본이 역지로 빼앗아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해당 고서적들을 빼앗은 것인가, 구입한 것은 없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궁내청 관료인 오카 히로후미(岡弘文)는 조선왕조실록 등의 고서적들은 다이쇼(大正) 시대에 ‘조선총독부가 일본으로, 궁내성으로 보낸 것이고, 빼앗았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 짐무자료로써 총독부에서 궁내성으로 이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조선왕실의궤 중에는 ‘궁내청이 일본의 고서점에서 구입한 4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오카의 답변에서 한일 양국 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재차 확인할 수가 있다. 조선왕실의궤는 조선왕조실록 등과 함께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로 접수되었으며, 그 중 일부가 당시의 궁내성으로 보내졌다. 한국에서는 강제병합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선총독부가 궁내성으로 조선왕실의궤를 기증한 것은 불법·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³⁹⁾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선총독부가 고서적을 ‘빼앗았

39) 해문, 『의궤 되찾은 조선의 보물』, pp. 61-63.

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는 오카의 답변에는 조선왕실의궤가 정상적으로 일본으로 반출된 것이라는 인식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한일도서협정은 강제병합에 대한 과거사 청산과는 상관없는, 미래의 한일관계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일본정부는 합법적으로 반출된 조선왕실의궤를 '자발적인' 조치로써 인도했으며, 이것은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과 동일한 것이었다. 한일도서협정은 간담화의 후속 조치로써 한일회담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의 문화재 인도를 규정한 협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 지배와 문화재 반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역사인식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역사인식을 통해 한일도서협정을 체결한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이 연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은 다음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같은 날의 외무위원회에서 공명당의 아카마츠 마사오(赤松正雄) 의원은 프랑스에 보관되고 있었던 외규장각 고서적들이 한국으로 돌아간 것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반환 혹은 인도가 일본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반노 유타카(伴野豊) 부외상은 프랑스는 국내법에 따라 5년 마다 갱신되는 대여방식으로 한국정부에게 인도했다고 설명한 후, 한일도서협정은 '일본 측의 자발적인 조치로써 무상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5월 26일에 열린 참의원의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오오노 의원은 고서적의 인도에 대해 반환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정부가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마츠모토 외상은 '이번 인도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와는 관계없이, 일본 측의 자발적인 조치로서 행해지는 것'이며, 협정에 인도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⁴⁰⁾

이와 같이 한일도서협정은 간담화를 바탕으로 이를 실천한, 그리고 한일회담 이후 첫 대규모 문화재 인도를 규정한 협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

40) 参議院, 「第177回国会参議院外交防衛委員会第11号」, 2011年5月26日.

지배와 문화재 반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역사인식이 내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한일도서협정을 체결한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

IV. 맺음말

본고는 강제병합조약 체결 100년이 되는 해인 2010년 8월에 발표된 간 담화와 동년 11월에 체결된 한일도서협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한일회담의 구조약 문제와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을 통해 간 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 내재된 역사인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을 밝히는 작업이었다. 이하에서는 본론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기로 한다.

한일회담의 구조약 문제에 대해 당시 일본정부는 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 체결된 조약과 협정들은 모두 합법적이었고, 이에 따라 식민지 지배 또한 정당했다는 입장이었다. 간 담화에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 내재되어 있었다. 간 담화를 둘러싼 국회 논의에 있어서, 일본정부는 간 담화와 강제병합조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한일회담의 기본조약을 언급하면서 강제병합조약이 유효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간 총리 역시 이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간 담화는 한국과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최초의 총리 담화였으나, 그 이면에는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역사인식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이 연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에 대해 당시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고, 문화재도 합법적으로 반출된 것이었다는 입장이었다. 한일도서협정 또한 동일한 입장이 내재되어 있었다. 일본정부는 한일도서협정 기준을 둘러싼 국회 논의에서 동 협정을 통해 ‘자발적인’ 조치로 고서적을 인도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일회담 당시 일본정부가 문화재 및 문화교류 협정을 통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사 청산과는 관련 없이 ‘자발적인’ 조치로써 문화재를 인도한다는 입장과 동일한 것이었다. 즉 한일도서협정은 간담화의 후속 조치로써 한일회담 이후 첫 대규모 문화재 인도를 규정한 협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었으며, 문화재도 합법적으로 일본으로 반출되었다는 역사인식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한일도서협정에서도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이 연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간담화와 한일도서협정을 통해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진일보한 태도를 보였지만, 동담화와 협정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고, 문화재 반출도 합법적이었다는 역사인식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간담화와 한일도서협정에 내재된 이와 같은 역사인식은 일본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의 연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국성하,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 연구.” 『한국독립운동연구』 제25집, 2005.
- 남기정, “한일관계에서 역사 문제와 안보의 연동 메커니즘: 투트랙 접근의 조건과 과제.” 『일본연구논총』 제45호, 2017.
- 박훈,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의 전개과정과 쟁점.”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편,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의제로 본 한일회담』, 서울: 선인, 2010.
- 엄태봉, “한일회담 중단가의 문화재 문제에 관한 연구.” 『일본공간』 제21호, 2017.
- _____, “제6차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 연구-교섭 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60호, 2018.
- _____,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재조명.” 『아태연구』 제26권 제2호, 2019.
- 외교부,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1-65차. 1962.8.21.-64.2.6 전5권 (V.3 22-32차 1963.1.11.-3.28)』, 1964.
- _____, 『제7차 한일회담(1964.12.3.-65.6.22)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 계획, 1965』, 1965.
- _____, 『2015 일본개황』, 서울: 외교부, 2015.
- 이기태, “일본 민주당 정권의 대한국정책.” 『일본연구논총』 제38호, 2013.
- 이원덕, “한일관계 ‘65년 체제’의 기본성격 및 문제점: 북·일수교에의 함의.” 『국제·지역연구』 9권 4호, 2000.
- 장박진, “한일회담에서의 기본관계조약 형성과정의 분석-제2조 ‘구조약 무효조항’ 및 제3조 ‘유일합성법 조항’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권 2호, 2008.
- 정재정, “한일협력과 역사문제-갈등을 넘어 화해로.” 『일본연구논총』 제43호, 2016.
- 조운수,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교섭.” 『동북아역사논총』 제51호, 2016.
- 최희식, “전후 한일관계의 구도와 민주당 정부 하의 한일관계.” 『국제·지역연구』 20권 제3호, 2011.
- 한소미, “문화재 반환협상의 국제정치: 2011년 일본과 프랑스의 한국 문화재 반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해문, 『의궤 되찾은 조선의 보물』,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 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内交渉史編纂委員会, 「韓国との文化財・文化協定の条文化についての交渉」, 1969年3月, No.461.
- 李鐘元他, 『戦後日韓関係史』, 東京: 有斐閣アルマ, 2017.
- 外務省, 「日韓予備交渉第21回会合記録」, 1962年12月26日, No.651.
- _____, 「日韓会谈第五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 記入なし, No.977.
- _____, 「第7次日韓全面会谈基本関係委員会第3回会合」, 1964年12月12日, No. 1345.
- _____, “도서에 관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 2010년 11월 14일, https://www.mofa.go.jp/mofaj/gaiko/treaty/pdfs/shomei_66_k.pdf(검색일: 2019.6.25.).

- 参議院, 「第50回国会日韓条約等特別委員会第2号」, 1965年11月22日.
- _____, 「第50回国会日韓条約等特別委員会第6号」, 1965年11月27日.
- _____, 「第134回国会本会議第4号」, 1995年10月5日.
- _____, 「第177回国会参議院外交防衛委員会第11号」, 2011年5月26日.
- 首相官邸, “菅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2010年8月10日, <https://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08/10kaiken.html>(검색일: 2019.6.25).
- 衆議院, 「第50回国会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条約及び協定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第2号」, 1965年10月25日.
- _____, 「第50回国会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条約及び協定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第6号」, 1965年10月29日.
- _____, 「第50回国会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条約及び協定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第8号」, 1965年11月1日.
- _____, 「第50回国会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条約及び協定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第10号」, 1965年11月5日.
- _____, 「第177回国会衆議院外務委員会第8号」, 2011年4月22日.
- 中内康夫, “日韓図書協定の作成経緯と主な内容-朝鮮王朝儀軌等の韓国政府への引渡し-.” 『立法と調査』 NO. 314, 2011.
- 藤原夏人, “【韓国】日韓併合100年をめぐる動き.” 『外国の立法』 No. 245-1, 2010.
- 권영진, “〈日총리담화〉 학계 ‘핵심비켜간 담화.’” 『연합뉴스』 2010년 8월 1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00810_10350_0005(검색일: 2019.6.25).
- 김동진, “日 관방, 강제징용자 보상필요 시사.” 『세계일보』, 2010년 7월 8일, <http://www.segye.com/newsView/20100708000142>(검색일: 2019.6.25).
- 김종현, “〈日총리담화〉 보수우익 반발에 ‘축소, 굴절.’” 『연합뉴스』 2010년 8월 10일, https://www.yna.co.kr/view/AKR201008101_14600073(검색일: 2019.6.25).
- 국립국어원, 『표준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_archView.do(검색일: 2019년 6월 25일).
- 박용채, “후쿠다 日 총리 ‘李 당선인 對日정책 기조 소중히 여길 것.’” 『경향신문』 2008년 2월 2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222349535&code=970203(검색일: 2019.6.25).
- 이강진, “일본, 조선왕실의궤 등 1,205책 반환키로.” 『YTN』 2010년 11월 8일, https://www.ytn.co.kr/_ln/0101_20101108201129205_5(검색일: 2019.6.25).
- 장성구, “‘日반출 문화재 반환’ 합의 의미와 전망은.” 『연합뉴스』 2011년 11월 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011082_10200043(검색일: 2019.6.25).

정우상, “강점기 약탈 문화재 日, 한국에 반환 추진.” 『조선일보』 2010년 7월 21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1/2010072100131.html(검색일: 2019.6.25.).

YTN, “한일, 조선왕실의궤 등 1,205책 도서 반환 서명.” 『YTN』 2010년 11월 15일, https://www.ytn.co.kr/_ln/0101201011150_218425069(검색일: 2019.6.25.).

Abstract

A Study on the Continu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Perception of Colonial Rule

: Focus on Kan Statement and Korea-Japan Agreement for Books

Taebong Um (Teaching Professor, Daejin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clarify the continu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perception of colonial rule through analyzing historical perception of the 'Kan statement' and 'Korea-Japan Agreement for Books'. In order to analysis the perception this article examines 'Kan statement' and 'Korea-Japan Agreement for Books' through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Agreement on the Art Objects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Korea-Japan Normalization talks.

Tokyo had held the perception that the 'Japan-Korea treaty of 1910' has been legally valid and following colonial ruling was legally legitimate. Therefore, Tokyo has similar perception on the issue on transfer of Korean cultural heritage to Jap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which was conducted by a legitimate authority of colonial ruling bodies based on the annexation treaty of 1910.

This article argues that similar historical perception can be found in the 'Kan statement' through examinations. 'Kan statement' and 'Korea-Japan Agreement for Books' had the same historical perception as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Agreement on the Art Objects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It is claimed that although Kan, the first prime minister to express apology to the colonial rule in Korea through official statement, was signed the Agreement for books, the first large-scale cultural properties delivery after the Korea-Japan talks, the historical perception that 'Japan-Korea treaty of 1910' and the export of cultural properties were legally valid has been still embedded in his statement and actions. This article clarifies the continu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perception of colonial rule through this analysis.

Keywords: Kan Statement, Korea-Japan Agreement for Books, Historical Perception, Perception of Colonial Rule, Continuity

투고일: 2019년 7월 10일, 수정일: 2019년 7월 29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8일